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6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5. 5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의원정수가 38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,
- 도직제의 일부개편에 따른 위원회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여,
- 현행 지방자치법부칙에 의거 다음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이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7명내지 10명으로 함. (안 제2조)
-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중 가정복지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삽입하고 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한다. (안 제3조 제2항)
-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월을 단축하여 1년 6월로 함. (안 부칙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
- 지방자치법부칙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 조례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: 10인
2. 기획경제위원회 : 8인
3. 내무위원회 : 8인
4. 교육사회위원회 : 8인
5. 농림수산위원회 : 8인
6. 건설교통위원회 : 7인

제3조제1항중 “의안과 청원 심사등을 처리하는” 을 “의안심사와 청원 및 진정서처리등의”로 하며, 동조 제2항제4호가목중 “가정복지국” 다음에 “보건환경연구원”을 삽입하고, 동조 제2항제6호중 “건설위원회”를 “건설교통위원회”로 하며 가목중 “건설도시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 하고 나목 “건설도시개발에 관한 사항”을 “건설교통개발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.

< 참고사항 >

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(제4,947호 '95. 4. 1)

제22조 제1항 중 “시·도의 지방의회(이하 “시·도의회”라 한다.) 의원정수는” 을 “지역구 시·도의원정수는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직할시”를 “광역시”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 시·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 다만, 산정된 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.

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(제4,949호 '95. 5. 10)

- 별첨: 표 2 -

□ 지방자치법 부칙 ('94. 12. 20)

제3조(이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위원회 조례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.) 1인을 둔다.

-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-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